

보 도 자 료		
 <b>환경부</b>  <b>KEITI</b>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<b>한국판뉴딜</b>	<b>보도일시</b> 2021년 <b>6월 28일</b> <b>조간</b> (6. 27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<b>담당 부서</b>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김지영 과장 / 김진형 사무관 044-201-6750 / 6754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	임현정 실장 / 조은애 전임연구원 02-2284-1810 / 1814
<b>배포일시</b>	2021. 6. 25. / 총 6매	

## 불법 어린이용품 시장감시, 소비자가 앞장선다

- ◇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(16명 선발) 발족
- ◇ 사용제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감시 강화

-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‘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’을 6월 28일에 발족한다.
  -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(모니터링) 경험이 있는 주부,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.
  -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(리콜)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.
-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·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·적발하고, 이를 환경부 및 유역(지방)환경청에 보고하며, 관할 환경청은 ‘환경보건법’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.
  -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(15명)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‘환경보건법’ 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.

-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·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,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,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 명령 조치를 받았다.
-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서, 회수 조치를 이행한 후 그 회수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토록 하는 ‘환경보건법 시행령’을 개정했다.
- 또한, 환경부 위해성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7개를 적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토록 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에 해당 17개 용품을 회수조치한 바 있다.
-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환경부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2천여개를 매년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”라며, “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감시단 발족 등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발굴·발전시켜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개요.  
 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진형 사무관(☎ 044-201-6754)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조은애 전임 연구원(☎ 02-2284-18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

□ **추진 목적**

-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이량 기준 등을 초과한 불법 어린이용품이 온-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는 ‘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’ 발족

□ **시장감시단 구성·운영 개요**

- (선발) 어린이용품에 관심이 많고 제품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, 학생 등 온-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일반국민 16명 선발
- (구성) 1팀당 3~4명으로 총 5개 팀을 구성하고, 팀별 모니터링 조사 매장, 조사제품 등을 지정하여 운영



- (주요 업무) 온-오프라인 불법 유통 어린이용품 감시·신고
  -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「환경보건법」 상 위반제품 시장 유통 감시·신고
  - 「환경보건법」 상 위반 의심용품 시장 유통 감시·신고
  -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홍보
  - 어린이용품 제조·수입·유통·판매사 요청사항 및 시장 여론 청취·전달
- (활동 기간) '21.6.28 ~ '22.12.31

**1. 어린이용품이란?**

- 장난감, 문구용품, 일회용 기저귀, 물휴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

**2.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지?**

-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(현재 4종이 고시)

환경유해인자 명칭 (영문명)	제한내용	용도
다이-n-옥틸프탈레이트 (Di-n-octyl phthalate; DNOP)	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$9.90 \times 10^{-1}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min}$ ,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$5.50 \times 10^{-2}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min}$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	어린이용품 (플라스틱 제품)
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(Diisononyl phthalate; DINP)	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$4.01 \times 10^{-1}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min}$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$2.20 \times 10^{-2}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min}$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	어린이용품 (플라스틱 제품)
트라이뷰틸 주석 (Tributyltin compounds)	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	어린이용품 (목재 제품)
노닐페놀 (Nonylphenol)	노닐페놀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	어린이용품 (잉크 제품)

※ 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(산업부고시 제2019-201호)」 제3.1.3호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(DNOP, DINP)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봄

**3. 전이량이란?**

- 어린이용품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입, 피부접촉, 호흡 등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양

#### 4. 위해성평가 개념 및 절차는?

-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·평가하는 것
- 위해성평가는 「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 예규 제585호, 2016.7.25.)에 따라 실시

평가 절차	수행방법	주요 업무
유해성 확인	<b>제품별 함유성분의 정성적 독성 확인</b> - GHS 건강영향 - 발암성·변이원성·생식독성 - 잔류성 및 기타 독성	-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방법 제시 및 신뢰성 검증 - 발암성, 생식독성, 변이원성, 반복독성, 자극성 및 과민성 등 물질별 독성정보 DB 작성
노출량·반응 평가	<b>물질별 정량적 독성값 확정</b> - 만성흡입독성 - 만성경구독성 - 만성경피독성	- 국내·외 독성실험 결과 검토를 통한 독성참고치(NOEL 등) 결정
노출평가 (초기평가 및 상세평가)	<b>노출시나리오 작성</b> - 제형·용도·노출경로 고려 - 노출량 산정 계산식 개발  <b>노출계수 선정</b> - 일반노출계수 - 제품별 노출계수  <b>제품사용에 따른 인체 노출량 산출</b>	- 노출량 산정수식 개발 (품목별×제형별×용도별×노출경로별)  - 제품별, 제형별 사용량 및 사용빈도, 사용시간 등 노출계수 선정  - 노출모델 툴 개발 - 시판중인 제품내 함유성분의 함량 분석 - 개별제품내 함유 성분에 대한 인체 노출량 산출
위해도 산출	<b>제품별 사용형태에 따른 함유성분의 위해도 산출</b> - 물질별 독성 대비 인체 노출량의 비를 통해 위해도 산정	- 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및 타당성 검증

## 5.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란?

-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'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 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
-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-n-옥틸프탈레이트(DINP)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(DNOP) 함유량을, 목재제품은 트라이부틸 주석(TBT)을,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
  - 다만, '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'에 따라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·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과 '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'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'환경보건법'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